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강명숙 의원)

의안 번호	20-35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5. .

발 의 자 : 강명숙, 김기석, 김종선,
김진천, 이민석, 장덕준,
최은하

1. 제안이유

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있어서 우수 체험 수기 제출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실질적 참여도와 실효성을 제고시켜 청소년의 대의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우수체험수기 및 표창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9조)

3. 관계법령 :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5조

4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5. 입법예고 : 2020. 5. 13. ~ 5. 17.

6. 조례안 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우수 체험수기 등) 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(우수 체험수기 등) 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 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.</u> <u>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회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u>

[관 계 법 령]

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[시행 2018. 9. 14.] [법률 제15453호, 2018. 3. 13., 일부개정]

제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활동 프로그램,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